

2019년 지역아동센터 감사 결과 보고

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9. 10. 14. ~ 10. 25.(10일간)
- 감사대상 및 일정 :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
- 감사범위
 - 2개소 : 2017.6.1.~ 감사일 현재까지 (*2017년 감사 실시)
 - 3개소 : 2015.9.1.~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
- 감사반 : 감사계장 외 5명
- 감사방법 : 사전 예비조사 및 실지(현장) 감사
- 감사중점
 - ▶ 종사자 관리, 아동·급식·위생 관리 전반
 - ▶ 재산·비품, 보조금·후원금 관리의 적정성
 - ▶ 예산·회계·계약과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
 - ▶ 시설운영과 안전관리, 기능보강사업 추진 적정성 등

II 감사결과

- 행정상 조치 : 7건 (시정 3, 주의 4)
- 재정상 조치 : 1건 225,181원 (세입 225,181원)
- 신분상 조치 : 없음
- 개선과제 : 1건(후원금 신청서 : 지정, 비지정 후원금 구분)

Ⅲ 종합평가

-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기준 준수실태, 재무·회계 규칙의 준수 여부, 아동·급식·위생관리 실태 등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내 지역아동센터 전체(5개소) 대상 감사를 실시한 결과,
- 복지서비스과 주관 점검을 통해 종사자 관리, 아동·급식·위생 관리 및 시설의 운영 전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 안내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, 특히,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을 중심으로 각종 기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음.
-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업무 연찬 부족과 관행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, 중대하고 고의적인 비위사항 등은 발견되지 않았음.
- 그러나, ○○○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감사계획 통보 및 수감자료 준비 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사 당일 시설운영 제반 수감 자료(서류)가 없어 시설업무 처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감사를 일정 부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.

※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감사 대상 포함 예정

- 예산회계분야에서는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, 차량유류대 지출 부적정, 시설 예산서 지연 제출 및 시설 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서 시설운영위원회 미보고, 시설 물품 관리 소홀,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의 사례가 있었고,
-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종사자 교육시간 미준수의 사례가 지적되었으며,
- 개선과제로는 “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외 사용할 수 없다.”고 규정되어 있는 바,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지정후원금·비지정후원금이 구분된 후원금 신청서로 개선해야 할 것임.
-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주기적인 지도·점검과 시설 종사자 대상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과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취지에 충실한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.

IV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

1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건)

시설명	행정상			재정상		
	계	시정	주의	계	세입	회수
○○지역아동센터	2	-	2	-	-	-
□□지역아동센터	1	1	-	-	-	-
◇◇지역아동센터	2	1	1	-	-	-
△△지역아동센터	1	-	1	-	-	-
◆◆지역아동센터	1	1	-	1 (225,181원)	1 (225,181원)	-

2

예산 · 회계 분야

Ⅰ 사례 1 | 청년 일·경험지원사업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(지연 지급)

-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,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.
-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근거 「근로기준법」 제5조(근로조건 준수)
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(임금 지급)

↳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 미준수(지연 지급) : ○○지역아동센터

Ⅰ 사례 2 | 차량비(차량유류대) 지출 부적정

- 차량비는 차량유류대, 차량정비유지비, 차량소모품비를 말함.
 - 개인명의 차량의 유류대를 보조금 등 시설회계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증빙을 갖추어 유류비를 산출함.
 - : 차량운행일지, 출발지와 도착지의 거리 확인, 운행일 당시 유가, 해당 차량의 연비

근거 「보건복지부 “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”」

↳ 차량별(시설차량, 개인차량) 운행 일지 미구분 : □□지역아동센터

Ⅰ 사례 3 |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위반

-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근거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

↳ 2017년 확정 예산서 지연 제출과 2016~2018년 시설 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 시설운영위원회 미보고 : ◇◇지역아동센터

↳ 2018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지연 제출 : △△지역아동센터

Ⅰ 사례 4 | 시설 물품 관리 소홀

- 물품구입
 - 내구연수 1년 이상, 물품가액 10만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할 때는 비품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함.

근거 「보건복지부 “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”」

↳ 시설 물품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: ◇◇지역아동센터

Ⅰ 사례 5 |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

-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근거 「부산광역시 “2019년 사회복지법인·시설 업무가이드”」 제4장 보수의 지급, 제11조(보수계산)
- 2019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

↳ 보수 일할 계산 미실시 : ◆◆지역아동센터

3 시설 관리 분야

Ⅰ 사례 1 | 종사자 교육시간 미준수

- 기존 종사자 교육(총25시간) : 집합교육(5시간), 선택교육(20시간)

근거 「보건복지부 “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”」

↳ 2017년 종사자 교육 18시간 이수 : ○○지역아동센터

4 개선 과제

Ⅰ 사례 1 | 후원금 신청서 개선

-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

근거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7조의7(후원금의 용도의 사용금지)

↳ 지정·비지정 후원금 미구분 신청서 사용(4개소)

; ○○, □□, ◇◇, △△지역아동센터